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2019년 7월 15일

개정 2024년 1월 10일

개정 2025년 8월 21일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 엘엔에스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2)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

(3) 판매회사 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수수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 투자자문재산의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 한다.

(2) 환매수수료 :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

(3)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전 을 말하며 법 제98조의2 및 법 시행령 제99조의2 등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규 출시 상품의 수수료는 기존의 동일 유형 상품의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1.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상품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 이 없는 유사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상품개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 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합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투자일임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의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고지

1.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일임업의 수수료

1. 수수료율

- 1)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나눈다.
- 2)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0)%로 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재계약에 대한 운용보수는 최초 자본계약(Capital Commitment)에 기초한다.
- 3) 성과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기존의 손실을 만회한 이후의 자본계약에 기초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산자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증액 및 감액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 수익률은 값이 음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 수수료율 기준

계약금액	기본 수수료	성과 수수료
고객 일임자산	연 (0)%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투자일임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1) 투자일임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연장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계약기간 중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고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3)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해지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한다.

계약기간 중 증도해지 시 환급수수료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X 기본수수료율 X (운용일수 / 365)]

- 4) 성과수수료 발생 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후취 일시납으로 하며 투자일임계약 일부.전부 해지시점,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평가자산의 계산

-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매도가격 평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한다.
- 2) 기타자산 : 고객과 합의된 가격

3) 미실현이익의 평가

- (1)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모주 등)는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 (2)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3) 주식배당, 유·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

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제10조 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일부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